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가단5029177 판결 [계약금반환등 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

담당변호사 최익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충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중 1)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8.부터 2022. 3. 8.까지 연 5%, 2)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16.부터 2022. 11. 29.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 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에서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2021. 11. 15.자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20,000,000원과 손해배상금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중 계약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계약금 지급일인 2021. 10. 8.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2. 3.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손해배상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다음 날인 2021. 11.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도 계약금 지급일인 2021. 10. 8.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는 2021. 11. 15.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다음 날인 2021. 11. 16.부터 피고가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

별지